"재난예방은 학교사랑의 실천입니다"

교육시설재난공제회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교육시설 재난안전 긴급대응반 외부 전문 기술인력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대규모 재난에 의한 교육시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현장 긴급대응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본회에서는 「교육시설 재난안전 긴급대응반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, 보다 신속한 긴급대응을 위하여 권역별 외부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자 귀 기관의 전문 기술인력 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,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가. 사업명 : 교육시설 재난안전 긴급대응반

나. 목 적 : 교육시설의 수업중단 및 2차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현장 긴급대응 및 전문성 확보

다. 업무범위 및 자격 : [붙임] 참조

라. 요청사항 : 붙임 문서의 "**권역별 외부 전문기술인력 추천 명단**"을 **작성**하시어 **4월 29일(월) 16:00까지 공문 제출**

※ 공제회 담당자 연락처 : 안전관리본부 예방사업부 전미연(tel : 02-781-0185)

붙임 교육시설 재난안전 긴급대응반 외부 전문기술인력풀 구성·운영(안) 1부. 끝.

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

수신자 : 대한건축사협회장, 대한건축학회장, 한국건설안전학회장, 한국건설안전협회장,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, 한국교원대학교총장,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장, 한국기술사회장,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,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, 한국지반공학회장, 한국지진공학회장

전결

담당 전미연 과장 황은아 예방사업부장 박재일 안전관리본부장 이창재
협조
시행 안전관리본부- 889 2019-04-17 접 수

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10층 / www.edufa.or.kr
전화 02-781-0185 전송 02-736-6098 / my0825@edufa.or.kr / 공개

[붙임]

교육시설 재난안전 긴급대응반 권역별 외부 전문기술인력풀 구성 · 운영(안)

◈ (배 경)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붕괴위험, 태풍 및 지진 등 대규모 재난·안전사고 발생 시,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**통합적 긴급대응체계 구축** 부재

◈ (목 적) 교육시설의 수업중단 및 2차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접근성을 고려하여 **신속한 현장 긴급대응 및 전문성을 확보**하고자 **권역별 전문인력 구축**

Ⅰ 사업개요

○ (사 업 명) 교육시설 재난안전 긴급대응반

○ (운영기간) '19. 5월 ~

○ 긴급대응반 구성 및 운영(안)

– (교육부) 긴급대응 관련 시책 수립·시행 및 총괄운영

– (공제회) 긴급안전점검 및 사고조사 등 긴급대응반 운영

– (교육연구기관) 기술지원 요청 및 협조

– (지원자원) 기술지원 협조

Ⅱ 권역별 외부 전문기술인력풀 구성

○ **(목 적) 권역별·분야별 전문가**로 **전국단위**의 전문기술인력풀 구성

○ **(분야구분) 토질 및 기초, 건설안전, 건축구조, 기계설비, 소방, 전기**

○ **(권역구분)** 서울·강원권, 경기·인천권, 충청권, 대구·경북권, 부산·경남권, 호남·제주권

○ **자격사항**

① 대학교 교직원 중 관련 분야별 교수 및 조교수

② 건축사, 구조기술사, 시공기술사,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

③ 관련 분야별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
④ 공무원 과장급 출신 중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⑤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⑥ 기타 학교시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

○ **(업 무)** 교육시설에 재난 및 사고발생에 따라 **신속한 교육시설의 피해현황조사 및 2차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실시**

– **(점검반 구성)**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긴급대응반 및 권역별 외부 전문가

○ **(위 촉)** 주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력풀(POOL) 구성

–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
○ **(대 가)**「엔지니어링노임단가기준」및 공제회「회의수당 및 자문료 지급지준」을 준용하여 지급

첨부 : 권역별 외부 전문기술인력 추천 명단 1부. 끝.